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6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이인선 · 김대식 · 김태호
최은석 · 임이자 · 강대식
윤상현 · 성일종 · 강선영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

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6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6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2항 전단 중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을 “제1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을 “제1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을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8의 제목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을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및 제8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의9제1항제2호 중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0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를 “제100조의4”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5항”으로, “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을 “제1항”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를 “제100조의8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0조의6제2항·제3항·제4항·제7항·제9항, 제100조의7제1항, 제100조의8제2항·제3항·제5항·제8항, 제100조의9제1항, 제100조의30제3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⑦ (생략)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frac{A}{B} \times C$$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

③ 제1항-----

-----.

④ 제1항-----

-----제1항-----

-----.

⑤ 제1항 및 제4항-----

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⑥ (생략)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또는 제8항-----

-----.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8항-----

-----.

⑤·⑥ (현행과 같음)

<삭제>

(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
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
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
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⑧ (생 략)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
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
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⑩ ~ ⑫ (생 략)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제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

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삭 제>

<삭 제>

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② ~ ④ (생략)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생략)

②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③ -----

-----30일-----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⑦ (생략)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
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
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
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
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신청·결정·환급 및 환급의 제한·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

<삭 제>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

-----제1항 및 제2
항-----제100조의4--
-----제1항 및 제5항--
-----제1항-
-----제3
항-----제100조의8
부터-----
-----,

-----,

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